

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(제44조 관련)

기 술 능 렷	시 설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컴퓨터 그래픽기능사, 전기공사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, 시각디자인기사, 시각디자인산업기사, 제품디자인기사, 제품디자인산업기사, 컬러리스트기사, 컬러리스트산업기사 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공인 받은 옥외광고사	작업장(면적 제한 없음)

비 고

-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.
-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.